

영업·마케팅/생산/구매/경영기획

자율준수편람

– 공정거래 –

2025

한국콜마(주)

차례



목차 및 차례

I. 들어가며

1. 공정거래위원회 알아보기

1.1 목적과 기능

4

1.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5

II. 공정거래법규

1. 공정거래법

1.1 제정 목적

6

1.2 경제력집중억제

6

1.2.1 키워드

7

1.2.2 우리회사 관련 제도

7

1.2.3 Q&A

16

1.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1

1.3.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1

1.3.2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30

1.3.3 위반시 제재

31

차례

1.3.4	Do&Don'ts	32
1.3.5	Q&A	33
1.3.6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37
1.4	경쟁제한적 결합 심사	38
1.4.1	개요	38
1.4.2	기업결합 수단	38
1.4.3	신고제도	39
1.4.4	심사	40
1.4.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41
1.4.6	Q&A	42
1.4.7	Do&Don'ts	45

III. 부록

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46
---	-----------	----

I. 들어가며

1 공정거래위원회 알아보기

1.1 목적과 기능

경쟁촉진



시장 참여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및 규제 집행

소비자 주권확립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경제력집중 억제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I. 들어가며

1.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경쟁정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거래정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정책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II. 공정거래법규

1. 공정거래법



1.1 제정 목적

공정거래법 전문 확인하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

경제력집중 방지

부당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1.2 경제력집중 억제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시 의무

채무보증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금융보험사,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II. 공정거래법규

1.2.1 키워드

구분	설명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총액이 GDP(국내 총생산)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정거래법에서의 의미)
특수관계인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지주회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



1.2.2 우리회사 관련 제도

-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법 제26~29조)**
 - 주요 내용: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등을 연 또는 분기별 공시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법인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공정거래법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법 제47조)
 - 정의: 공시대상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 '사익편취행위' 또는 '부당 내부거래'로 통칭함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관련 금액 10% 이하)
 - 형사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요건

제공 주체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공 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함) -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위의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금지 유형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구분	내용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거래 •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 거래 • 인력 거래 <p>▷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p>

II. 공정거래법규

예시	[자금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주체가 제공업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산, 상품, 용역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업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제공업체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인력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일 경우

■ 사업 기회의 제공

구분	내용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주체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지원 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 상당한 규모의 거래

구분	내용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① 시장참여자 조사 ② 비교견적 검토 ③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J의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를 위한 무상 신용 보강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한 2세 소유의 J토건 및 6개 계열회사에게 약 3조 2천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분가치 상승, 배당급 및 급여의 형태로 동일인 2세에게 이익이 귀속됨

공정위 판단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를 통해 J토건이 대규모 사업 성공을 이룩하며 기업집단 내 핵심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J토건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재편되며 동일인 2세로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C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C의 계열회사 D사가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E사 및 F사에게 자신이 개발·등록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의약품 보관용역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상표권 이용 및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지원객체인 E사와 F사는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H의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H의 최상단 회사인 I사가 총수 2세 소유의 J사와 K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고 J, K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I사가 진행하던 건설공사를 J, K사에게 이관하는 것은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적절한 사익편취행위인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부당 내부거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II. 공정거래법규

▪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법 제18조)

- 제한 사항
 -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 보유
 - 손자회사 국내회사 소유 금지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관련금액 20% 이하)
 - 형사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심결례

H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사실관계

H사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M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의 39.92%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H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와 공시기한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인 경우
 - 공시기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의결내용 공시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K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K는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사항 등을 미의결, 미공시한 건이 12건으로 확인되었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K 집단의 7개 계열회사에게 총 과태료 3억 5950만원을 부과하였음

관련 심결례



A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제재

사실관계

A사는 2023년도 1분기부터 2023년도 4분기까지 계열회사인 B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고 공시기한을 경과한 이후 공시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A, B사에게 과태료 3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판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두8568 판결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C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S사가 보유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을 다른 계열회사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율보다 높게 적용하여 C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S사 등이 IT계열회사인 C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요소가 되는 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규모, 종류,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들은 S사 등이 C사 와 체결한 OS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인건비 단가 산정에 있어서 고시단가를 할인하여 산정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S사 등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C사가 S사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는 타 계열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었으므로, S사가 C사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 비율을 적용하여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유와 결론을 유지하여 S사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

일감 몰아주기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계열회사와의 IT 서비스 거래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OS 계약 시 ‘인건비 단가’ 또는 ‘유지보수비율’이 정상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됨을 유의하여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1.2.3 Q&A



Q.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 등기일, 합병 등기일, 분할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 신고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되나요?

A.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①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Q.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A. 지주회사 설립 · 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①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②주식처분 금지 계약, ③사업의 현저한 손실 ④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 감소 또는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이 곤란 경우)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개별정상금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개별정상금리는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유사한 상황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 시점의 금리 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 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봅니다.

Q. 정상 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甲이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정상 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A.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1)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 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 주체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 급여로 간주합니다.
- (2)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 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 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 금액을 정상 급여로 간주합니다.
- 다만, 인력 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 A.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 또한, 거래상 지원 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 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총수일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 규율 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Q.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규율 대상 회사간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인가요?

A.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 목적을 위한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47조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내부거래로서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 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 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당연히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가 낙찰 받게 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A.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이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신제품 광고 업무를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회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였다.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내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회사의 정보시스템에는 핵심적인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계열 IT업체에 위탁하였다. 보안성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외부 IT업체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보안협약서 체결, 계약서상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 마련,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1.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45조)

1.3.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거래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 거절, 거래관계 중단, 거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I사의 핵심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게 한 행위 제재

사실관계

방향포경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I사는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S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핵심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 결과 자주포 방향포경 경쟁 입찰 과정에 I사가 단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공급자로 선정 되었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I사가 S사로 하여금 거래를 거절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행위 금지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G사의 가맹점 비가맹점 간 차별적 취급 행위 제재

사실관계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자 가맹사업주인 G사는 비가맹점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여 거래하였음

공정위 판단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차별적취급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 시킨 G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관련 심결례



N사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사실관계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N사는 자신들과 계약관계인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인 C사와의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3자 정보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음. 이에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C사에게 제휴 불가 의사를 표명하여 C사는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되었음

공정위 판단

경쟁사인 C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N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3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관련 심결례



J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판매사인 J사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현금 및 물품,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리베이트(현금성 대가),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J사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299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개인을 고발하였음

- **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와 같은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관련 심결례



S사의 거래 강제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하였음.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S전자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강제 행위 위반으로 판단하여 S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거래상 지위 남용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B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세계 2위 칩 설계 사업자인 B사는 구매자인 S사에게 부품 선적 중단, 구매주문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내세워 스마트 기기용 부품 공급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하였음

공정위 판단

B사가 구매자인 S사에게 공급 장기 계약 미체결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S사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하였음

관련 심결례

N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행위 제재



사실관계

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N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할당, 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음

공정위 판단

N사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II. 공정거래법규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배타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B사 및 R사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제재



사실관계

이륜차량 공급 사업자인 B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계열회사 관계인 R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와 R사의 행위가 R사가 영위하는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45조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 사업활동 방해

-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배타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K사의 지입차주 사업활동 방해 행위 제재



사실관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K사는 지입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행정청에 변경신고함으로써 지입 차주들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가 어렵도록 하였음

공정위 판단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본 사업활동까지 방해한 K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지원 수단별 예시

부당한 자금 지원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게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지원주체가 납품처로 하여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게 하는 경우

부당한 인력 지원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 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C의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C소속의 D사와 E사가 각각 TRS계약을 신용보강 및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F사 및 G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공정위 판단

D사와 E사의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부실계열사 F와 G사가 저금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두 계열사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어 각각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지원주체와 객체에게 과징금 65억 4,100만원을 잠정 부과하였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A의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A의 100% 자회사인 C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규모 자금 차입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지주회사 G사는 자신의 예금 750억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C사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정위 판단

G사가 C사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C사의 경쟁여건이 개선되었고 이는 화장품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각 사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1.3.2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구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관련규정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법 제47조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제한 없음 (모든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금지행위 유형	①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제공 행위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①정상 거래 조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 제공 ③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④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예외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 지원 행위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II. 공정거래법규

1.3.3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엄중처벌

▪ 형사적 제재

- 부당한 지원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지대(Safety Zone)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에만 적용 가능

II. 공정거래법규

1.3.4 Do & Don'ts



항목	check
계열사, 관계사와의 거래를 비계열사, 비관계사와의 거래와 별도로 구별하여 협상부터 거래개시, 종료 과정까지 법 위반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한다.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할 경우, 다수 후보 사업자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구비한다.	
당사의 내부거래 관리규정을 근거로 계열사 및 관계사 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는 모두 문서화하여 별도 보관한다.	
거래 대가가 예산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반드시 거래 대가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래 조건을 검토할 때는 시중의 통상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계열사 및 관계사와 계약할 때에도 다른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게 계약 불이행시의 페널티 조항을 포함한다.	
계열사 및 관계사에게도 이행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독촉 및 자연이자 지급 등 책임을 묻는다.	
계약 종료 후 자동 기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의 객관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근거를 문서화한다.	

II. 공정거래법규

1.3.5 Q&A



Q. A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저희 C회사와 각각 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 저희 C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 주체인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A회사의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A회사는 경쟁사의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A.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부당 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집단적 차별 취급과 부당한 공동 행위는 동일한 사항을 규제하는 이중적 규제 아닌가요?

A.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차별 취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당한 공동 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 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 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별 행위가 행해져야 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이익 제공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됩니다.

Q. 소비자에 대한 거래 거절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거래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위탁매매인에게 판매 대상을 지정하는 위탁매매관계도 거래상대방 제한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나요?

A.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지역을 제한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구별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에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익 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합니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 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제재하는 것은 민법상 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요?

A.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사 행위 등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 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거래 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 관계, 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1.3.6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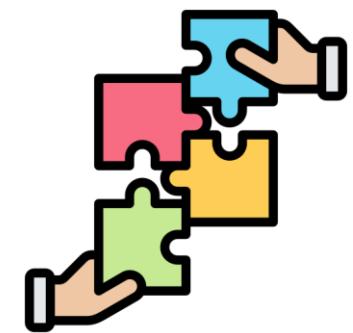
❖ 계열사, 관계사와의 거래 관련

항목	check
계열사, 관계사와의 거래를 비계열사, 비관계사와의 거래와 별도로 구별하여 협상부터 거래개시, 종료 과정까지 법 위반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한다.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할 경우, 다수 후보 사업자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구비한다.	
당사의 내부거래 관리규정을 근거로 계열사 및 관계사 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는 모두 문서화하여 별도 보관한다.	
거래 대가가 예산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반드시 거래 대가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래 조건을 검토할 때는 시중의 통상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계열사 및 관계사와 계약할 때에도 다른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게 계약 불이행시의 페널티 조항을 포함한다.	
계열사 및 관계사에게도 이행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독촉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책임을 묻는다.	
계약 종료 후 자동 기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의 객관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근거를 문서화한다.	

II. 공정거래법규

1.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1.4.1 개요



- **기업결합이란?**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통칭 M&A(Mergers and Acquisitions)라고 칭함
- **기업결합 심사의 목적**
 -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 지는 경우, 시장의 경쟁제한성 시정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함

1.4.2 기업결합 수단

구분	설명
주식취득·소유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분할에 따른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II. 공정거래법규

1.4.3 신고제도

■ 신고요건

- 규모 기준: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 기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고 해당 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 필요

■ 유형별 신고시기

구분	신고 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 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회사 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임원 겸임	겸임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대규모 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 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 신설 참여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신고기한 후 신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II. 공정거래법규

1.4.4 심사

- **신고절차**
 -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까지 연장 가능)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 **경쟁제한성 심사기준**

형태		고려사항
수평 결합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 해외경쟁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신규진입 가능성 - 유사품 및 인접 시장 존재여부 <p>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수직 결합	원재료나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봉쇄 효과 -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p>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혼합 결합	수평·수직 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 진입장벽의 증대 효과 <p>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II. 공정거래법규

1.4.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 **시정조치**
 - 결합금지: 가장 강한 조치로서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
 - 조건부 승인: 구조적 조치(자회사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 행태적 조치(일정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한 등)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은 승인
- **시정조치 불이행시 제재조치**: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사벌칙)

관련 심결례

국내 D 항공사 및 A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사실관계

D 항공사와 A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노선 운수권의 타 항공사 이관,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2024년 조건부 승인되었다. 그러나 D 항공사와 A 항공사는 ‘공급 좌석수 축소’ 시정조치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D 항공사와 A 항공사의 기업결합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중 “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54억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1.4.6 Q&A



Q.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하나요?

A.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신고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됩니다.

Q.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 (2)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결합의 예외로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Q. A사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A사의 시장점유율은 34%, B사의 시장점유율은 18%로 결합 이후 1위 사업자가 되고 결합 이후 2위 사업자인 C사의 시장점유율이 36%라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나요?

A. 기업결합 이후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2%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6%로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인 13%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됩니다.

Q. A사가 B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C사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A사와 B사간 자산 양수 계약 후 A사와 C사간 자산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A사의 B사에 대한 잔금 지불과 C사의 A사에 대한 잔금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기업결합신고는 누가 해야하나요?

A사 : 자산총액 3천 억 이상 2조 원 미만인 회사

B사 : 자산총액 3백 억 이상 3천 억 미만인 회사

C사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

A. 당해 사례에서 A사의 B사 영업 양수는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A사는 신고기간 중에 해당 영업을 C사에 다시 양도하게 되어 신고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별도로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사의 A사로부터의 영업 양수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C사에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C사는 대규모 회사이므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20% 이상 주식 취득으로 이미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이후 상대 회사의 증자 또는 주식 매각 등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A. 주식 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새로운 회사 설립에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B사와 C사는 계열회사 관계인데 이러한 사실이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A. 신설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됩니다.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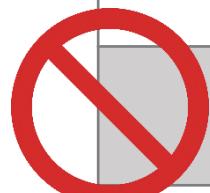
II. 공정거래법규

1.4.7 Do&Don'ts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

-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단, 이후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대상)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 최다출자자인 신고 회사 자체가 신고 요건인 신고대상 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만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와 신설 · 흡수 · 분할 합병을 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 임차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콜마홀딩스(주)(이하 ‘콜마홀딩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콜마홀딩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콜마홀딩스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공정거래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인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

2. 특수관계인 :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①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계열회사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5~6촌 혈족 및 4촌 인척,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 생모

②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계열회사(‘사외이사 지배회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독립경영요건 불충족 시 포함)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상업사용인 등)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3. 기업집단 : 동일인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1) 지분율 기준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생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2) 지배력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⑤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속경영사무국 ESG(CP)팀’(이하 ‘주관부서’)을 통하여 거래 유형을 판단 받을 수 있다.

-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 ②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
- ③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 ④ 상품·용역 거래
- ⑤ 인력 제공
- ⑥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통행세 거래

■ 제4조(회사의 의무)

콜마홀딩스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본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형의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결재:●, 합의:○]

구분	한국콜마			콜마홀딩스		
	팀장	준법지원팀장	인사팀장	ESG팀장	인사총무팀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등 자금거래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	○		●		●
상품*1)·용역 거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거래						
인력의 제공	●	○	○	●	○	●

*1) 상품 거래 건당 500,000,000원 이하의 거래는 적용하지 아니함.

※ 그룹웨어 내부거래 승인요청서 양식 활용(상신 부서는 필요시 업무 유관 부서를 참조에 포함시킬 수 있음)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제2장 내부거래의 원칙과 절차

■ 제5조(내부거래의 원칙)

- 내부거래는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 거래상대방 선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등의 경쟁적인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래조건 설정 시 거래당사자간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조건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체적으로 거래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임의로 수정 또는 파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보관한다.

■ 제6조(내부거래의 승인절차)

- 내부거래 승인 신청은 V-GMP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양식을 통하여 진행한다.
-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는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이하 '매입회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작성 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출회사'가 1개의 동일한 상품·서비스 등을 동시에 다수 '매입회사'에게 제공하는(예: 정기 IT서비스) 등의 거래 유형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다수의 '매입회사' 중복된 요청서 작성으로 인해 결재 지연 등의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회사'가 다수의 '매입회사'를 대신하여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입회사'가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작성 주체 및 작성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승인 요청은 계약서 체결 이전 최소 7일 전까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 당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단,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승인을 위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 진행 전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승인이 완료된 경우 해당 승인은 계약에 따른 거래기간 만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거래 건 별로 계약 기간은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으며, '매입회사'는 거래 가격, 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요청 건 또는 기 승인된 거래 건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입회사'는 이에 따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내부거래 승인 요청 시 필수사항)

1.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① 거래 상대방 및 거래 유형
- ② 거래 목적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 사유
- ③ 거래 기간 및 거래 규모
- ④ 기타 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항 일체

2.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결재 요청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첨부한다.

- ① 계약서(법무팀 검토 완료본)
- ② '내부거래 체크리스트'[별첨 1]
- ③ 기타 거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및 자체 검토 자료

제3장 기타사항

■ 제8조(점검 및 보고)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승인 절차 운영에 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등 필요 시에는 시정조치, 권고의견 제시 등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제9조(징계)에 따른다. 점검 및 사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CP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 제9조(징계)

‘주관부서’ 점검 및 보고 결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사 위원회 회부는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1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은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2021.5.3)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3)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별첨 1]. '내부거래 체크리스트'

콜마홀딩스(Kolmar Holdings Regulation)

내부거래 체크리스트

개정일 : 2024. 12. 17

구분	작성 부서(매입회사)	작성자	작성 일자

1. 계약 방식 확인

문항	입찰	수의
- 관계회사와의 계약 방식은 무엇입니까?		

▼
표[A] 작성 표[B] 작성

① 표[A] : '입찰' 계약 검토 항목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	입찰 조건을 특정 관계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였는가?		
2	입찰 형식으로 보이기 위해 입찰과 관계없는 회사 또는 입찰 조건을 사전 협의한 회사들을 둘러리 세웠는가?		
3	입찰 검토 시 사업비용, 기술력, 전문인력 구성 등이 아닌 주사위 던지기, 제비뽑기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4	입찰 결과가 나왔음에도 특정 관계회사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결과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였는가?		
5	관계회사로 입찰 대상 선정 후 입찰 조건과 다르게 관계회사에 불리 또는 유리하도록 조건을 임의로 조정하였는가?		
6	입찰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팀 검토를 받았는가?		
7	입찰 계약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찰 요건 관련 문서, 회사별 입찰 제안서, 비교 검토/결과 선정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8	향후 공정한 입찰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입찰 조건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는가?		

'입찰' 계약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어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ESG팀'으로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② 표[B] : '수의' 계약 검토 항목

1	일반문항	예	아니오
	<p>해당 관계회사 선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였는가? (해당하는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관련 내용은 [별첨 1]을 참고</p>		
1-1	(1) 효율성	예)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2) 보안성	예)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 관계회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불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3) 긴급성	예)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상황임	
1-2	회사 선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2	가격 적정성 문항	예	아니오
2-1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 및 조건을 확인하였는가?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부 고시, 법령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근거로 산정 기준에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활용 근거 : (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표자료		
2-2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가?		
2-3	비관계회사와 거래조건 비교 시 해당 거래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없애거나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진행하였는가?)		
2-4	가격 산정 및 조건 설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시장 분석 보고서, 외부기관 감정서, 협상 회의록 등)		
3	물량 적정성('상품/용역' 거래 한정) 문항	예	아니오
3-1	비관계회사와 진행 중이던 거래를 타당한 근거 없이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 이를 관계회사의 물량으로 대체하였는가?		
3-2	관계회사와의 거래 물량은 통상적으로 비관계회사와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만큼의 상당한 수준인가?		
	▶ 해당 거래액 규모가 상대 관계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부록①] 내부거래 관리규정

3-3	해당 거래물량만으로 상대 관계회사가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상대 관계회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수준인가?	예	아니오
4	거래단계 적정성(통행세) 문항	예	아니오
4-1	제3자인 비관계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관계회사를 거래 중간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하였는가?		
4-2	관계회사를 중간 단계에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가?		
4-3	관계회사는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4-4	관계회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제공했는가? (해당 역할 대비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지는 않은지)		
5	일반문항	예	아니오
5-1	수의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팀 검토를 받았는가?		
5-2	계약 이후에도 해당 거래조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관계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객관적 근거 하에 공정한 거래조건이 설정되도록 하겠는가?		

‘수의’ 계약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어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ESG팀’으로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